

프랑스 자활제도의 최근 동향과 정책적 함의

박찬용*

◀ 요약 ▶

본 연구는 프랑스 자활제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 자활제도에서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된 자활기관은 자활기업(EI), 임시자활기업(ETIT), 자활공동체(ACI), 중개단체(AI)이다. 이외에도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7개의 자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2009년에 새로 도입된 고용연대급여(RSA) 수급자를 대부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이들은 모두 자활중앙협의회(CNIAE)에 의해 총괄조정되고 있다. 프랑스의 일반 자활률은 2007년의 경우 자활기업은 26.8%, 임시자활기업은 42.0%, 자활공동체는 약 3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프랑스 자활제도의 목표는 단순히 자활률의 제고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있는 경제를 구현한다는 사회연대경제의 목표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연대경제의 기반 위에서 프랑스 자활제도는 기존의 사회발전을 위해 존재해온 여러 제도들, 예를 들면, 200여 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사회기금, 일반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자활기관 지원,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고용연대급여(RSA) 수급자나 저소득계층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자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과 같은 여러 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발전되어 왔다는 점이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다.

* 국립안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parkch@andong.ac.kr)

1. 서론

최근 세계경제의 계속된 불황속에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 일반국민들도 자활제도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더 갖기 시작한 것 같다. 정부도 자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자활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자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차상위 계층 등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빈곤·실업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 일자리부족과 빈부격차 악화에 대한 가시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자활제도와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7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프랑스가 2차대전을 마치고 30년간 경제부흥을 거친 이후 경기침체를 맞이하는 1970년대 초기에 구조적 문제로서 사회적 배제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은데 예를 들면, 고용불안, 저학력, 실업, 불확실한 미래 등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는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비사회화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프랑스 자활제도는 프랑스 내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자의 비중이 대폭 높아졌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장기실업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시장기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기실업과 빈곤상태에 있는 근로능력자들의 취업에 대해서 자활사업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자활제도는 환경적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있는 초기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아직 근로유인효과나 탈수급률, 그리고 자활률 등이 프랑스의 그것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자활제도가 앞으로 취약계층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자활시킬 수 있게 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답변 중 하나는 이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자활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다른 선진국가들의 자활제도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자활제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자활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고 또한 서유럽에서 하나의 자활제도 모델로서 정립되어 온 프랑스의 자활사업이 본 연구의 주제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프랑스 자활제도에 대한 최근의 변화와 그 내용 소개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에 프랑스 사회부조와 자활에 대한 최근의 소개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제도의 소개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내문헌들과 프랑스에서 발간된 자활제도 관련 논문 및 정부자료를 통해 자활제도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자활제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프랑스 자활제도에 대해 발표된 국내의 최근 연구가 거의 없어 기존연구에 대한 설명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프랑스 자활제도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내용만을 소개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워낙 프랑스 제도가 국내에 알려진 것이 미미하여 해외의 분석적인 기존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랑스 사회연대경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자활제도와 연관되며 그리고 그 바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다음으로 프랑스 자활기관의 자활 프로그램 참여자의 상당비율이 사회부조 수급자이므로 자활제도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회부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프랑스 사회부조 프로그램 전체와 최근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사회부조에서 자활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최저부조(Les Minima Sociaux)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자활프로그램에 대해 그 현황과 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프랑스 자활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 자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결론부분에서 정리하였다.

2.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SS)

1) 자활

우리나라의 자활이라는 용어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갖는 프랑스어로 ‘경제활동을 통한 통합’(l’Insertion par l’Activité Economique, IAE)을 들 수 있다. l’Insertion par l’Activité Economique를 영어로 직역하면 The Insertion by Economic Activity가 되는데 여기서 Insertion이란 Exclusion의 반대의미로 즉,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서 통합(Insertion)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합이라면 주로 지역간 통합, 즉 동서통합 또는 이념이 상이한 그룹간의 통합 등 수평적 통합을 주로 이야기해왔으나 프랑스 자활에서 통합(Insertion)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구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일반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다시 돌아오는 등 배제되었던 상태에서 통합을 하되 그 통합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활동(Economic Activity), 즉, 근로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통한 통합(l’Insertion par l’Activité Economique, IAE)을 줄여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통합”이라고 하고, 이는 “자활”을 의미한다고 간주하였음을 밝혀둔다.

2) 사회적 배제와 통합(Excusion Sociale et Insertion)

이처럼 프랑스의 자활제도를 살펴볼 때 “통합(Insertion)”이란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의 자활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적 배제와 통합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유럽에서는 사회적 배제(Exclusion Sociale)와 통합(Insertion)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여기서 ‘배제’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로서, 과거 프랑스에서 사라졌다고 생각되었던 절대빈곤과 유사한 형태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빈곤은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시각이 있으나 배제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배제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통합, 즉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실업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의 통합을 대안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의 바탕에는 ‘사회연대경제(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SS)’라는 프랑스의 오래된 사회철학이 바탕하고 있다.

3) 사회연대경제(ESS)

‘사회연대경제(ESS)’에 대한 프랑스에서의 사전적 설명을 보면, 개인간 평등과 연대 그리고 경제적 자립의 원칙을 지향하는 모든 조합, 단체, 협회, 재단 등이 함께 공정한 거래나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경제모델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경제를 다음 3가지 분야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분야는 이윤에 따라 행동하는 사적 소유자의 상업적 민간경제, 두 번째 분야는 정부의 지출에 의해 작동되는 공공분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윤이 목적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공동체 활동의 분야이며 바로 이 분야가 사회연대경제(ESS)에 해당한다. 즉, 이러한 경제는 사람과 사회적 목적 및 사회적 서비스를 우선시하면서 비영리적 목적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데, 예를 들면, 금전적 이득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를 높이려는 기업과 단체들의 노력과 같은 사회적 효용이 사회연대경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다음에 다시 다루겠지만 자활기업(Entreprise d'Insertion, EI)이 빈곤상태에 있는 실업자에게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이 자활기업(EI)은 당사자에게 정말 고마운 일을 해준 것이고 사회에게는 실업급여나 사회부조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회적 효용이다. 현재 프랑스 GDP의 10% 그리고 약 180만개의 일자리가 바로 이러한 경제에 의한 것이다. 이 분야에는 비영리목적에 의해 일하는 1,2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이 분야의 경제는 특히 자활사업과 함께 발전해 오고 있다(Bourret, 2006).

사회연대경제(ESS)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용어는 ‘사회적 경제’와 ‘연대적 경제’라는 두 단어가 복합된 것이며 이들 각각의 역사적 배경도 상이하다. 먼저 사회적 경제는 19세기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그 목적이 어떤 한 개인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경제활동에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투표에서 1인에게 1개의 투표권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9세기 당시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에 의해 발생한 피해 앞에서, 사회개혁가와 이상주의 사상가들은 생산수단의 국유화보다 나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공동체적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그리고 연합회 등을 만들었다. 한편 연대적 경제는 1970년대 대량실업, 사회적 배제의 증가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발전을 찾으려는 노력 등과 같은 배경 하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대안적 경제활동 방식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공평한 거래, 바이오 환경농업,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지역생산물 유통, 자활제도 등이다.¹⁾ 따라서 사회연대경제(ESS)는 공동체적 방식으로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경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방식의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기관들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 자활기업이나 기관들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프랑스 자활제도는 사회연대경제(ESS)의 큰 틀 안에 있는 제도로서 사회연대경제(ESS)의 움직임과 함께 하게 되어있으며, 따라서 자활제도의 목표도 사회부조 수급자들을 자활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회연대경제(ESS)의 목표와 동일하게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같이 큰 목표를 갖고 있는 제도로 판단된다.

3. 프랑스의 사회부조제도

국가마다 사회부조제도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한 국가의 사회부조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기여하지 않고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급여를 의미한다. 프랑스 사회부조(Prestation Sociale)²⁾는 다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가장

¹⁾ <http://www.atelier-idf.org/economie-sociale-solidaire/#c12199170361> 내용 참조

²⁾ 사회부조를 영어로는 Social Assistance라고 하는데 이를 프랑스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영어의 단어순서만 바뀐 것과 같은 Assistance Social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부조를 프랑스어로 Assistance Sociale이라고 할 것 같으나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를 Prestation Sociale, 즉, 사회급여라고 해석되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사회부조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이다. 이외에 종합가족수당(Prestation Familiale), 취업수당(Prime pour l'Emploi)이 있다. 이들은 모두 비기여, 소득조사형급여인 사회부조급여인데 이 중 종합가족수당(Prestation Familiale)의 일부 급여는 소득조사형이 아닌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부조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부조 프로그램들 중에서 자활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회부조는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의 고용연대급여(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이다. 따라서 프랑스 사회부조에서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에 대해 알아보되 특히 고용연대급여(RSA)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였다.³⁾

1)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는 개인이나 한 가족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다. 2009년 5월 현재 프랑스 국내영토내에서 운영되는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의 급여가 9개 있다.⁴⁾ 이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 급여중에서 고용연대급여(RSA)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고용연대급여(RSA)는 최저통합급여(RMI)⁵⁾와 편부모수당(API)⁶⁾을 2009년에 대체하면서 탄생하였다.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연대급여(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⁷⁾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부조급여이다. 대상자

³⁾ 종합가족수당(Prestation Familiale)과 취업수당(Prime pour l'Emploi)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부조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부록에 관련 설명을 첨부하였다.

⁴⁾ 2009년 5월 현재 프랑스에는 10개의 사회부조급여가 있는데 이 중 9개가 프랑스 국내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급여이고 나머지 하나는 프랑스 해외영토에서 운영되는 급여이다.

⁵⁾ 최저통합급여(RMI)는 1988년 12월에 도입되었으며, 다른 사회보험제도나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25세이하의 사람은 아동이 있거나 임신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자격이 없었다. 가족 소유자이면서 주택급여를 받는 사람과 무료의 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은 급여가 감액되었다. 수급자는 현재의 고용센터(Pôle Emploi)의 전신인 구직소(ANPE)에 등록해야 하였으며, 자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매분기마다 이를 평가받아야 하고 불이행자는 급여가 중지되었다. 이 급여는 2009년부터 고용연대급여(RSA)에 의해 대체되었으나 최저통합급여(RMI)의 수급자중 최저통합급여(RMI) 액수가 고용연대급여(RSA) 급여액보다 더 많은 경우 현재까지도 최저통합급여(RMI)를 지급받을 수 있다.

⁶⁾ 편부모수당(API)은 1976년에 도입되었으며, 편부모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한 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거나 또는 현재 양육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고 일을 구할 능력이 없는 독신에게 주어졌다. 급여는 12개월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가장 어린 아동이 3살이 될 때까지 지불이 가능하지만 만일 가장 어린 아이 나이가 3살 이상이면 최장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급여는 2009년부터 고용연대급여(RSA)에 의해 대체되었으나 역시 편부모수당(API)의 수급자중 편부모수당(API) 액수가 고용연대급여(RSA) 급여액보다 더 많은 경우 현재까지도 편부모급여(API)를 지급받을 수 있다.

⁷⁾ 프랑스 본토의 경우 2009년 6월 1일에 시작되었고, 해외 영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는 근로능력유무와 상관없이 수급조건을 만족시키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수급자들은 프랑스 고용센터(Pôle Emploi)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급자가 만일 월 500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고용센터(Pôle Emploi)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적이지는 않다.⁸⁾ 그리고 수급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월 500유로 이하의 소득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한다면 자활을 위한 코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연대급여(RSA)는 최저통합급여(RMI) 보다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최저통합급여(RMI)에서는 25세 이하의 사람은 아동이 있거나 임신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고용연대급여(RSA)는 18세 이상에서 25세 이하인 자가 지난 3년 중에 2년간을 근로한 자인 경우는 수급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2009년 4월 현재 최저통합급여(RMI) 대상자는 110만명 그리고 편부모수당(API) 대상자는 10만명으로 최저통합급여(RMI)와 편부모수당(API) 대상자가 모두 120만명이었으나, 2009년 8월 현재 고용연대급여(RSA)대상자는 약 310만명으로 약 190만명이 더 증가하였다.

201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고용연대급여(RSA)는 직업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466.99유로를 지급하고, 자녀가 없는 부부가 직업이 없는 경우 월 700.49유로를 지급한다. 그런데 독신이면서 월 500유로의 소득이 있는 경우 월 220유로의 고용연대급여(RSA)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 500유로와 함께 총 720유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일을 안 할 때의 466.99유로보다 253.01유로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다.

[표 1] 2011년 무취업자의 월 최대 고용연대급여(RSA)

자녀수(명)	독신가구(유로)	부부(유로)
0	466.99	700.49
1	700.49	840.58
2	840.58	980.68
자녀 1명 증가시	186.80	186.80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건강부(Ministère de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
<http://www.sante.gouv.fr/les-minima-sociaux.html>

⁸⁾ 물론 다른 직업을 구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등록을 할 수 있다.

고용연대급여(RSA)는 예금공탁공사(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⁹⁾가 운영하는 국가기금과 도에 의해 재정이 지원된다. 그리고 도에 의해 지원된 고용연대급여(RSA) 예산은 중앙정부가 도에게 환급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연대급여(RSA)는 중앙정부와 국가기금에 의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고용연대급여(RSA)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프랑스 사회부조급여의 근로유인효과 문제를 완화했다는 점이다. 즉, 사회부조급여를 받던 사람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게 되어 급여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따라서 고용연대급여(RSA)는 일을 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증가하는 급여를 보장하고, 일을 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는 최저소득만을 보장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용연대급여(RSA)는 수급자가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는데 다음 3가지 경우에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첫째, 수급자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소득이 있게 되거나 또는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고용연대급여(RSA)의 일부는 계속 지급되므로 수급자의 전체 소득은 증가한다. 고용연대급여(RSA)는 ‘고용’을 통한 사회부조급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부조급여의 효과가 함께 하는 사회부조급여이므로 고용연대급여(RSA)라고 명하는 것이다. 고용연대급여(RSA)는 고용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급자가 일반 직장에 취업하였을 경우, 새로운 직장의 임금과 동시에 그동안 받아오던 급여의 일부분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과거 사회부조급여 수급자들이 급여의 삭감 혹은 단절을 두려워해 저임금 고용으로의 복귀를 꺼려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즉, 고용연대급여(RSA)의 수준은 임금과 함께 과거 급여에서 임금의 38%를 제외한 금액을 계속 받게 된다. 가령, 월 448유로를 최저통합급여(RMI)로 지급받고 있던 수혜자가 파트타임근로(월 70시간)로 한 달 최저임금 519유로를 받는다면, 이 근로자는 이 임금과 함께 고용연대급여(RSA) 251유로($448\text{유로} - (519\text{유로} \times 38\%)$)를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이전 제도에서 수혜자가 고용으로 복귀하였다면 1,600유로 이하의 임금일 경우, 처음 3개월은 최저통합급여(RMI) 100%, 4~12개월까

⁹⁾ 예금공탁공사(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는 민관합동으로 1816년에 설립된 공공투자기관이며, 그 역할은 시장이 해결 할 수 없는 분야에 기금을 투자하여 사회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동안의 투자처는 주로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퇴직기금, 공공주택건설, 여성경제활동, 경제위기대처, 중소기업발전, 각종 사회보험발전, 자활프로그램 등으로 이러한 여러 사회적 장치가 자활제도의 발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는 삭감된 급여(급여 100%-임금× 50%)를 수령하고, 1년 후부터는 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었다(Le Monde, 2009).

둘째, 고용연대급여(RSA)로 제도변경이 있는 후에도 과거의 최저통합급여(RMI)와 편부모급여(API)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각 개인에 적합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이 업무를 프랑스 고용센터(Pôle Emploi)가 조직하고 담당한다. 이 취업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적인데 과거의 최저통합급여(RMI)와 편부모급여(API) 수급자들 뿐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월 500유로 이하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고용연대급여(RSA)를 수급할 수 있다.

셋째, 고용연대급여(RSA)는 노동시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육아, 이사, 교통 등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지원을 한다.

한편 고용연대급여(RSA)외의 다른 급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적 실업부조(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는 장기간의 실업으로 실업급여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주정부 차원의 실업급여혜택으로 1984년에 도입되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수급자는 65세 이하여야 하며, 급여 청구 전 10년 동안에 5년간은 근로를 했어야 한다. 2011년 월 최대 급여액은 일반율을 적용할 경우 467.50유로, 가산율을 적용할 경우 671유로이다. 급여수급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재원의 2/3는 국가로부터 충당되며, 1/3은 공무원으로부터의 기여금에서 충당되며, 실업보험국(Branche Chômage)에 의하여 운영된다.

퇴직동일급여(Allocation Equivalent Retraite, AER)는 2002년에 도입된 일종의 실업급여이다. 60세가 되기 전에 노후소득공제에 160회의 회비를 납부한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을 지원하는 급여이다. 2011년 1월 1일 자로 이 급여는 소멸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수급받아온 자들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급여의 월 최대지원액은 2011년의 경우 1,009.23유로이다.

일시적 대기급여(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ATA)는 2006년에 기존에 있던 통합급여(Allocation d'Insertion, AI)를 대체하면서 시작된 일종의 실업급여로서 고용센터(Pôle Emploi)가 운영하고 국가가 예산지원을 한다. 이 급여는 프랑스에 잠정적인 체류

허가를 받고 현재 망명신청을 한 18세 이상의 외국인 등과 같이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시적 대기급여(ATA) 이전에 시행되었던 통합급여(AI)는 1984년에 도입되었으며, 실업급여 혹은 보충적 실업급여(ASS)에 의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다. 즉, 국외추방자, 국적상실자, 정치적 망명자 및 과거의 죄수 등과 같이 실업급여나 보충적 실업부조(ASS)를 수급할 자격이 없는 집단만이 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급여의 월 최대지원액은 2011년의 경우 329.41유로이다.

1975년에 도입되었으며, 가족수당기금(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에 의해 재정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부조급여(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 중 80% 이상의 영구적인 장애가 있거나, 최소 50% 이상의 장애가 있고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된 경우에 지원한다. 수급자들은 질병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 이 급여는 최대 5년간 지급하고, 급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속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료검사를 실시한다. 2011년의 경우, 이 급여의 월 최대액수는 독신인 경우 711.95유로이다.

보충장해급여(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ASI)는 1957년에 도입되었는데 그 대상자는 사회보험에서 운영하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격자들이며 이들에게 고령자최저급여(Minimum Vieillesse, MV)와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지급대상자의 연령이 고령자연대급여(ASPA) 수급대상자의 연령이 될 때까지이다. 2011년, 이 급여의 월 최대액수는 독신이거나 부부 중 한명만 대상인 경우 380.07유로, 부부가 모두 대상인 경우 627.18유로이다.

1980년에 도입된 미망인급여(Allocation Veuvage, AV)는 자녀가 있는 55세이하의 미망인을 위한 부조제도이다. 하지만 임금근로자나 농업종사자의 배우자이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타 자영업자의 배우자이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사회보험기여금에 의하여 재원이 충당되며, 일반대상자는 질병보험국(Branche Maladie), 그리고 농업종사자는 농업사회상호공제기금(Caisse de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CMSA)에서 담당한다. 급여기간은 최장 2년이며 급여액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며, 3년의 기간제한이 있으나 청구인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최저 50세 이상이라면, 청구를 2년간 연장시킬 수 있다. 2011년, 이 급여의 월 최대액수는 570.21유로이다.

고령자연대급여(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Agées, ASPA)는 2006년 한해

동안 고령자최저급여(Minimim Vieillesse, MV)와 공존하면서 과도기적 기간을 거친 후 2007년에 최저고령자급여(MV)를 완전 대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령자최저급여(MV)는 1956년에 만들어졌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해, 근로에 부적격한 경우라면 60세의 경우에도 급여를 지원하였다.

고령자최저급여(MV)는 고령근로자를 위한 급여(allocation aux vieux travailleurs salariés), 고령비근로자를 위한 급여(allocation aux vieux travailleurs non salariés), 고령자특별급여(allocation spéciale de vieillesse), 고령자보충급여(allocation supplémentaire de vieillesse), 농업인고령자급여(l'allocation de vieillesse agricole) 등의 급여들을 총괄한 급여이며 고령자연대급여(ASPA)는 이 모든 급여들을 모두 대체하였다. 2011년, 이 급여의 월 최대액수는 독신이거나 부부 중 한 명만 대상자인 경우 708.95유로이고 부부 모두 대상자인 경우 1157.46유로이다.

연대급여(Revenu de Solidarité, RSO)는 2001년에 도입되었는데, 이 급여가 다른 급여와 다른 점은 프랑스 본토가 아닌 해외영토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급여라는 점이다. 이 급여는 최소 55세 이상이면서 노동시장에서는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최소한 2년 이상 최저통합급여(RMI)를 수급자이었던 자들을 지원하는 급여이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의 급여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자활제도이므로 프랑스 자활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회부조, 즉,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에 대해 살펴보고 기타 자산조사형 급여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부조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겠다.

2) 탈수급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의 여러 급여 중에서 2009년 6월부터 시행된 고용연대급여(RSA)의 탈수급률을 찾아보았으나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탈수급에 대한 통계자료를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고용연대급여(RSA) 도입 이전에 시행되었던 최저통합급여(RMI)를 비롯하여 보충적 실업부조(ASS), 편부모급여(API), 장애인부조급여(AAH)의 탈수급률을 살펴보았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탈수급률은 해당 급여의 전체 수급자를 100%로

보았을 때 이중에서 계속 수급상태로 남는 자의 비율과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의 급여들 중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급여와 다른 급여를 지원 받기위해 수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탈수급률이다. 2008년의 경우 장애인부조급여(AAH)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들의 탈수급률은 20%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보충적실업부조(ASS)의 탈수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장애인부조급여(AAH)는 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부조급여(AAH) 대상자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의 탈수급률은 전반적으로 최저통합급여(RMI)와 편부모급여(API)의 탈수급률과 비슷한 수준인 20%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표 2]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 급여별 탈수급률¹⁾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충적 실업부조 (ASS)	수급자 수 (천명)	394.7	373.1	369.9	401.6	393.2	348.9	324.0
	탈수급 (%)	24.5	23.1	31.5	31.3	34.8	33.2	29.7
	수급지속 (%)	67.6	73.3	64.2	64.7	60.9	62.8	66.6
	타급여등록 (%)	7.9	3.6	4.3	4.0	4.3	4.0	3.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저통합 급여 (RMI)	수급자 수 (천명)	1090.3	1144.2	1238.5	1289.5	1278.8	1172.1	1141.9
	탈수급 (%)	22.2	21.0	22.3	24.2	28.7	26.3	24.5
	수급지속 (%)	74.3	75.4	74.0	72.3	67.8	69.8	70.6
	타급여등록 (%)	3.5	3.6	3.7	3.5	3.5	3.9	4.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편부모 급여 (API)	수급자 수 (천명)	146.4	150.6	156.9	168.1	179.2	172.4	168.0
	탈수급률 (%)	23.9	23.8	22.8	24.4	30.3	28.3	22.8
	수급지속 (%)	75.4	75.5	76.6	74.7	69.3	70.8	76.6
	타급여등록 (%)	0.7	0.7	0.6	0.9	0.4	0.9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 부조급여 (AAH)	수급자 수 (천명)	751.1	766.4	786.1	801.0	804.0	813.2	848.8
	탈수급률 (%)	8.1	8.1	7.9	8.5	8.6	6.9	7.6
	수급지속 (%)	91.3	91.3	91.5	90.8	90.9	92.5	91.8
	타급여등록 (%)	0.6	0.6	0.6	0.7	0.5	0.6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본 통계는 경제활동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2011)

¹⁰⁾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2011)

4. 프랑스의 자활제도

프랑스는 노동고용건강부(Ministère du Travail, l'Emploi et de la Santé)¹¹⁾에서 자활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자활사업과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통합(L'Insertion par l'Activité Economique, IAE)'을 들 수 있다고 하였고,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줄여서 편의상 근로통합(IAE)이라고 하고 이를 자활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프랑스 자활제도는 활동내용이 상이한 11개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4개 조직은 반소외법¹²⁾에 의해 행정당국이 승인한 조직이고, 나머지 조직들은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자활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반소외법에 의한 조직은 다음과 같다. 임시자활기업(Entreprise de Travail Temporaire d'Insertion, ETTI), 자활기업(Entreprise d'Insertion, EI), 자활공동체(Ateliers et Chantiers d'Insertion, ACI), 중개단체(Association Intermediaire, AI)이다. 이외에도 지역관리기업(Regie de Quartier, RQ), 자활고용주그룹(GEIQ), 작업훈련장(Chantier Ecole, CE), 꾸라스(COORACE), 사회재통합연맹(FNARS), 엔비연맹(Fédération ENVIE), 연대만들기(Tissons la Solidarité) 등의 자활조직들이 있는데 이들 조직은 행정당국으로부터 반소외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조직은 아니지만 실제로 프랑스의 자활사업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자활대상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Pôle Emplo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에는 자활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위의 네 개의 조직, 즉 자활기업(EI), 임시자활기업(ETTI), 자활공동체(ACI), 중개단체(AI)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된다. 프랑스 자활조직들은 그 활동내용이 상이해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또는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조직들은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지원받는 재정 규모는 각 자활조직이 고용한 자활근로자의 수와 자활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

11) 영어로 표현하면 Ministry of Labor, Employment and Health가 된다.

12) 1998년에 제정된 반소외법(la loi de la lutte contre les exclusions)은 모든 국민에게 고용, 주거, 건강,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체로 예산의 약 20%가 자체적인 수익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약 80%는 외부의 지원에 의한 것이란 점이 유사하다.

1) 자활조직과 프로그램

(1) 자활중앙협의회(Conseil National de l'Insertion par l'Activité Economique, CNIAE)¹³⁾

자활중앙협의회(CNIAE)는 1991년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립되었고 정부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한다. 원래 시민단체와 지방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주도로 시작한 자활중앙협의회(CNIAE)의 역할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복귀와 고용정책에 대한 자문 및 감시, 둘째, 자활을 위한 일자리들을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와 관련분야 경험 및 방법론 공유를 활성화, 셋째, 프랑스 사회경제 조직¹⁴⁾ 내에서 자활사업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 구성원은 국가공무원, 선출된 의원, 여러 노동조합, 경제인 협회, 여러 단체 등이다. 즉, 관련 정부부처에서 10인, 자활관련 기관¹⁵⁾의 대표와 개인이 12인, 선출된 10인(이중 5인은 정부 그리고 나머지 5인은 지자체와 도의회 등에서 추천), 노동조합으로부터 10인 등 모두 42인이 국무총리실의 법령에 따라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급여 없이 자원봉사를 한다. 자활중앙협의회(CNIAE)의 회장은 2011년 12월 현재 하원의원이며 하원의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Yves Censi의원이다. 자활중앙협의회(CNIAE)는 노동고용건강부(MTES)내에 있는 고용직업훈련국(DGEFP)과 프랑스 공공금융기관인 예금공탁공사(Caisse des Dépôts)¹⁶⁾에 의해 운영과 예산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¹³⁾ CNIAE는 Conseil National de l'Insertion par l'Activité Economique의 약자이다.

¹⁴⁾ 이러한 조직으로는 빈곤-소외정책중앙협의회(Le Conseil National des Politiques de Lutte Contre la Pauvrete et Exclusion, CNLE), 사회노동고등협의회(Le Conseil Superieur du Travail Social), 사회경제고등협의회(Le Conseil Superieur de l'Economie Sociale), 공공구매를 위한 경제전망(L'Observatoire Economique de l'Achat Public) 등 유럽 사회기금의 목표를 추구하는 여러 협의체들이 있다.

¹⁵⁾ Chatier école, le CNCE GEIQ, le CNEI, le CNLRQ, le COORACE, la FNARS, l'UNIOPSS

¹⁶⁾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를 Caisse des Dépôts로 줄여서 표기하기도 한다.

(2) 자활기업(Entreprise d'Insertion, EI)¹⁷⁾

자활기업(EI)은 1970년대 후반에 처음 나타났는데 이 시기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 즉, 사회연대경제(ESS)의 인식이 나타난 시기이다. 그리고 1983년부터 자활기업(EI)을 지역적으로 대표하는 광역자활기업협회(UREI)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협회들은 자활기업(EI)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대 정부 로비활동을 하였다. 1988년에는 자활기업(EI)들을 대표하는 자활기업협회(Comité National des Entreprises d'Insertion, CNEI)가 설립되었다. 1988년 프랑스는 실업자와 노숙자가 급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 정부는 최저통합급여(RMI)법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자활기업(EI)들은 그동안의 부조활동보다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 공식화된 자활기업(EI)은 고용연대급여(RSA) 수급자, 장기실업자와 취약계층 등을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게 하면서 취업능력을 키우게 한 후 일반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 자활기업(EI)은 외견상 일반기업과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다음 같은 점에서 일반기업과 차이가 있다. 자활기업(EI)을 창업하거나 일반기업에서 자활기업(EI)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사회프로젝트(Project Social)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창업할 기업이 사회에 어떤 공익적 기여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환경보전, 문화발전, 공정한 무역 등 사회에 기여할 기업목표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밖에도 재원조달 등 창업에 필요한 재무 및 향후 기업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지만, 이 자활기업(EI)이 일반기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되었고 또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자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자활기업(EI)이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에는 생산품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데, 세제상 혜택이 자활기업(EI)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품을 구입하는 저소득계층에게 가격을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자활기업(EI)에게는 세제상 혜택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활기업(EI)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작업장 무상임대, 물품구입 및 알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이러한 지원들이 일반적인 것처럼 설명하기

¹⁷⁾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된 조직

어렵다.

자활기업(EI)에서 일하는 자활근로자중 약 39%(2007년 기준)가 고용연대급여(RSA) 수급자이고, 지난 2년 이상 실업상태이었던 자활근로자의 비율은 약 32%이다. 그런데 자활근로자 선발은 우리나라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활기관에 수급자를 위탁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활기업(EI)이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에 앞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센터(CCAS)를 통해 적절한 대상자인지를 승인받는 절차가 있다.

프랑스에는 자활기업(EI)을 네트워크화 하는 조직이 3개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활기업협회(Comité National des Entreprises d'Insertion, CNEI)이다. 이외에도 사회재통합연맹(FNARS)과 꾸라스(COORACE)가 있으나 이들 조직은 자활기업협회(CNEI)와는 달리 자활기업(EI) 이외의 다른 기업과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활기업협회(CNEI)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나머지 조직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활조직을 설명할 때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다. 자활기업협회(CNEI)는 자활사업 관련기업의 약 60%를 대표하며, 640개의 자활기업(EI)이 가입되어 있고 이 기업들이 매년 38,000명의 자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 협회는 자활기업(EI)들을 대표해서 정부에게 자활기업(EI)의 이익을 대변한다. 아울러 이 협회는 자활기업(EI) 뿐만 아니라 임시자활기업(ETTI)에 대한 지원도 자활기업(EI)에게 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 협회 산하에는 23개의 지역에 각 지역의 자활기업(EI)들을 대표하는 광역자활기업협회(Union Régionale des Entreprises d'Insertion, UREI)가 있다. 따라서 자활기업(EI)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정부정책에 건의를 하고 싶을 경우 광역자활기업협회(UREI)를 거쳐 자활기업협회(CNEI)로 그 의견이 전달된다. 자활기업협회(CNEI)와 광역자활기업협회(UREI)의 주 업무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이 자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EI)과 임시자활기업(ETTI)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기업(EI)과 임시자활기업(ETTI)이 지역사회의 고용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활기업(EI)의 시장친화적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과 교육을 한다. 이를 통해 자활기업(EI)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의 근로 능력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활기업(EI)과 임시자활기업(ETTI)들의 경험과 지식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를 조사하고 전파하여 이들 기업들의 발

전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도 한다.

(3) 임시자활기업(Entreprise de Travail Temporaire d'Insertion, ETTI)¹⁸⁾

자활기업(EI)과 마찬가지로 1991년에 공식화된 임시자활기업(ETTI)은 파견형 자활기업인데, 이들 기업은 고용연대급여(RSA) 수급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과 한시적 계약을 통해 파견근무를 하도록 한 후 이들이 기업 내에서 업무를 익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 한다. 임시자활기업(ETTI)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임시직 일자리이며 주로 공장, 환경, 물류, 토목, 청소 등 분야의 일자리들이다. 임시자활기업(ETTI)은 자활근로자들과 최장 2년간의 근로계약을 맺는데 이는 자활기업(EI)의 경우와 동일하며, 자활근로자들에게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임시자활기업(ETTI)에서 근로하는 자활근로자의 취업가능성은 자활조직에서 근무하는 모든 자활근로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임시자활기업(ETTI) 자활근로자중 약 23%(2007년 기준)만이 고용연대급여(RSA) 수급자로서 이는 자활기관 중 가장 낮은 비율이고 또한 지난 2년 이상 실업상태이었던 근로자의 비율도 약 19%로 가장 낮은 비율이기 때문이다.

(4) 자활공동체(Ateliers et Chantiers d'Insertion, ACI)¹⁹⁾

자활공동체(ACI)는 자활조직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2005년에 노동법에 등록되었으며, 자활조직 중 가장 노동력이 취약한 계층을 고용한다. 자활공동체(ACI)는 고용연대급여(RSA) 뿐만 아니라 보충적 실업부조(ASS), 퇴직동일급여(AER) 등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급여의 수급자들도 그 대상으로 하며, 아울러 노숙자시설 등 시설거주자, 장기실업자, 26세 미만의 사회부적응자 등도 대상으로 한다. 자활공동체(ACI)에서 일하는 자활근로자중 약 60%(2007년 기준)가 고용연대급여(RSA) 수급자이며, 지난 2년 이상 실업상태이었던 근로자의 비율이 약 41%인데, 이 비율들은 자활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자활공동체(ACI) 자활근로자들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¹⁸⁾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된 조직

¹⁹⁾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된 조직

자활공동체(ACI)에 고용된 이들은 작업장에서 각 대상자에게 맞도록 특별하게 조정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향후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한다. 자활공동체(ACI)에서 일하는 자활근로자들은 고용지원근로계약(CAE)을 맺게 되는데 이 계약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 그리고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로조건이다. 고용주가 취약계층과 이 계약을 맺으면 정부로부터 고용보조금을 받게 된다. 자활공동체(ACI)는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상당부분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충지원 명목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고, 아울러 자활공동체(ACI)의 조직을 개선하는 명목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아비즈(AVISE)²⁰의 지역지원장치(Dispositif Local d'Accompagnement, DLA)와 도의 자활기금(Fond Départemental d'Insertion, FDI), 그리고 프랑스 악티브(France Active)란 자영자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자활공동체(ACI)의 자활의 정책결정과 교육 등에 기초자치단체, 도의회, 광역의회가 관여하고 있으며, 다음 조직들에 의해 설립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즉, 비영리민간단체, 기초자치단체, 도, 조합,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센터(CCAS 또는 CIAS), 국가직업훈련기관, 국가농업교육기관, 도단위 농업회의소, 국립산림청(Office National des Forêts) 등이며 이 조직들의 리스트는 법령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

자활공동체(ACI)의 산하기관인 꼬까뉴정원(Jardins de Cocagne, JC)은 무공해 채소를 생산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사회 및 자활을 위한 농장이다. 1991년에 처음 문을 연 이곳은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 수급자, 무소득자, 집이 없는 자, 장기실업자, 한번도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자 등 사회 또는 직업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이곳에서는 무공해 채소 등을 생산하여 이곳 농산물을 소비하는 회원가입자들에게 판매하는데 이를 통해 이곳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곳은 사회, 경제, 환경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이곳 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취약계층 근로자, 채소재배자, 회원가입자, 이웃, 지역농업인, 협조기관 등의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서 이들의 목적, 즉, 사회적으로 유익한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 ② 친환경 농업제품을 생산, ③ 생산품은 가입회원들에게 판매, ④ 여러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들과 연대

²⁰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인 아비즈(AVISE)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예금공탁공사(Caisse des Dépôts)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유럽사회기금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조달한다.

등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계약기간동안 농장전문가, 채소재배자,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 하에서 자활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여건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

꼬까뉴정원(JC)은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에 그 수가 20개에서 50개까지로 늘어났다. 이렇게 많아진 꼬까뉴정원(JC)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꼬까뉴정원(JC) 조직을 만들기로 결의 하고, 1999년 7월에 꼬까뉴네트워크(Réseau Cocagne, RC)를 설립하였다. 꼬까뉴네트워크(RC)는 꼬까뉴정원(JC)들의 활동을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전국에 있는 꼬까뉴정원(JC)으로 확산시키고, 자활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더 개발하는 업무를 한다. 그리고 꼬까뉴정원(JC)들은 꼬까뉴네트워크(RC)에 참여하여 꼬까뉴정원(JC)들끼리 서로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협동을 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자활근로자들은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경작준비, 배송준비, 작업장준비, 회원가입자들과의 상담, 회계 및 비서업무 등의 일을 한다.

(5) 중개단체(Association Intermediaire, AI)²¹⁾

중개단체(AI)는 1980년대에 설립되었으나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1987년으로 자활조직중 가장 먼저 법적인 효력을 갖은 조직이다. 중개단체(AI)는 자신의 조직에 등록되어 있는 고용연대급여(RSA) 수급자, 장기실업자와 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중개단체(AI)가 중개하는 근로자들의 약 2/3가 여성인 점은 다른 자활기관의 근로자들 구성과 상이한 점이다. 이들 자활근로자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는 일들은 주로 가정도우미, 청소, 상품운반, 정원가꾸기 등의 일 회성이나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다. 이때 사용자들은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개단체(AI)가 근로자를 중개할 때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하지만 이 중개단체(AI)들은 영리 단체는 아니며 국가와의 협약에 의해 재정적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중개단체(AI)에서 일하려면, 26세 미만의 취약계층,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장기실업자, 장애가 있는 근로자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개단체(AI)는 이들과 계약을 맺고 이들을 고용하므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이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21)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된 조직

먼저 고용센터(Pôle Emploi)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다른 자활기관들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중개단체(AI)가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국가가 중개단체(AI)에 재정지원을 한다. 지원액은 연간 최대 30,000유로 내에서 각 중개단체(AI)마다 다른 액수를 지원한다. 지원액의 결정은 중개단체(AI)가 고용하고 있는 자활근로자의 수와 근로능력 상태, 자활프로그램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만일 중개단체(AI)가 담당부처와 약속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 최근 중개단체(AI)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2003년에는 922개이던 중개단체(AI)가 2004년에는 908개, 2005년에는 877개 그리고 2006년에는 828개로 계속 줄고 있다.

중개단체협회(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Intermédiaires, UNAI)는 중개단체(AI)에 의해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협회는 중개단체(AI)들을 대표하고 동시에 중개단체(AI)들의 대변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을 응집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협회는 중개단체(AI)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사하고 상호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도록 하며, 특히 자활단체들 중에서 중개단체(AI)의 독특성을 살려나가려는 노력을 한다.

(6) 지역관리기업(Régie de Quartier, RQ)²²⁾

지역관리기업(RQ)의 설립은 1970년대 프랑스 루베(Roubaix)시 알마야르 구역에서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전투적인 지역철폐반대운동에서 기원하였다. 지역철폐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군의 사회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구역을 재구조화시키는 조직으로서 도심민중공동체(Atelier Populaire Urbain, APU)를 만들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RQ)이라는 형태의 민간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엄한진 외, 2009).

지역관리기업(RQ)은 전국에 137개가 있으며 약 7,000여 명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 기업이 많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이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실업비율이 평균보다 높고 공무원 수가 적어 정부의 손이 적게 미치고 주민끼리 충돌이 잦으며 폭행이 빈번하고 불법장사가 성행하여 주민들간 긴장감이 존재하고 치

²²⁾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조직

안이 불안해진 지역이다. 지역관리기업(RQ)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 기업은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주로 지역의 시설들을 수리하며, 가꾸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일을 한다. 지역관리기업(RQ)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한 일을 한 자활근로자들이 궁극적으로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 기업의 예산의 20~30%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70~80%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고용한 자활근로자의 급여를 2년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자활기업(ED)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다른 자활기관들과 달리 지역관리기업(RQ)은 지역주민들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도록 중재하고 계도하며, 낙후된 마을을 정상적인 마을로 환원하는 노력을 하며, 지역의 주거, 거리, 공간, 공공시설 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독특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시가 아파트 관련 일, 예를 들면, 청소, 미화, 수리 등을 지역관리기업(RQ)에 위탁하면 지역관리기업(RQ)은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을 고용하여 작업하는데 이들에게 이 일자리는 정식 직장이 아니라 재취업 훈련 과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임대인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역기업들이 함께 협동하고 있다.²³⁾

한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리기업(RQ)과 함께 농촌지역의 지역관리기업(RQ)은 농촌지역관리기업(régie de territoire, RT)이라고 별도로 분리하여 구분하지만 그 역할은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RQ)들의 조직을 총괄하고 대표하는 조직으로는 지역관리기업위원회(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CNLRQ)²⁴⁾가 있다. 1988년에 설립된 지역관리기업위원회(CNLRQ)에는 현재 138개의

²³⁾ 지역관리기업(RQ)의 활동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녹지공간조성, 건물유지관리, 주거시설 개보수, 공동 주거공간 관리, 도로 및 노상시설 유지 및 관리, 쓰레기 및 방해물질 처리, 지하실 및 지하주차공간 관리, 공동묘지 관리 및 청소부 배치, 주민간 중재 및 사회문제 개입 및 방법활동(맘지기, 주차장 살피기, 하교질서 및 안전 등), 세탁-다림질-수선 작업장, 재활용 매장 작업장, 폐자원재활용작업장, 식당작업장 등이다. 이외에도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시민단체 차고운영, 대서인, 권리안내, 마이크로 그레드 안내, 지역주민잔치, 발코니가꾸기, 지역신문, 암조기발견정보제공, 학습도우미, 사회네트워크 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구인업무대행, 직원교육 대행회사 선별 및 섭외, 개인별 경력을 바탕으로 한 취업지도, 불어교육, 자동차 운전교육, 취업을 위한 정보기술 교육, 주민들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사교기회 제공,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도서배달 및 도서에 대한 대화, 후서혹한기에 노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새로이 이사한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²⁴⁾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조직

회원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지역관리기업(RQ)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지역관리기업현장에 동의를 한 다음 지역관리기업위원회(CNLRQ)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관리기업위원회(CNLRQ)는 지역관리기업현장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지역관리기업’ 지위를 부여하고 인증 이후에도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이 지위를 유지시키거나 박탈하는 권한을 가진다.²⁵⁾

(7) 자활고용주그룹(GEIQ)²⁶⁾

고용주그룹(GE)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훈련하는 기업(대부분 중소기업)들의 그룹이다. 즉,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시켜 취약계층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일반적인 노동시장으로 돌아가 사회에 통합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활고용주그룹(GEIQ) 예산의 평균 10% 미만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예산은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들로부터 받은 연간 가입비, 직업훈련에 대한 평생직업훈련기금모금기구(Organisme Paritaire Collecteur Agree, OPCA)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기타 지역사회의 기관들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등을 통해 운영된다. 따라서 대부분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되고 정부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하겠다.

자활고용주그룹(GEIQ)은 프랑스 전역에 180개가 있으며, 여기에 4,00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여기서 4,000개의 일자리가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약 70%가 일반 직장을 구해 이곳을 떠나는 등 성공적인 자활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일자리는 대부분 건축, 위생, 농업, 물류, 운송 등에 치우쳐 있으며, 최근에는 고객관리, 방문케어, 사회의료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7년부터 자활고용주그룹(GEIQ)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년 GEIQ조정평가위원회(CNCE GEIQ)에 의해 인증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1994년에는 설립이 결정된 자활고용주그룹(GEIQ)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자활고용주그룹(GEIQ)의 활동

²⁵⁾ 지역관리기업위원회(CNLRQ)는 이밖에도 다른 자활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면서 국제활동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럽지역관리기업연합(AERDQ), 벨기에, 네델란드, 독일, 영국, 이태리 조직들과 연합하고 아울러 불어권 국가들, 예를 들면, 알제리 꼬뜨디부아르 등에 지역관리기업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등에 협력을 하고 있다.

²⁶⁾ GEIQ는 Groupement d'Employeurs pour l'Insertion et de la Qualification의 약자이다.

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며 아울러 기업들에게 인증뿐만 아니라 자활고용주그룹(GEIQ)이란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GEIQ조정평가위원회(CNCE GEIQ)에는 122개의 자활고용주그룹(GEIQ)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을 다시 4개의 지역GEIQ조정평가위원회(CRCE GEIQ)로 그룹화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자활고용주그룹(GEIQ)이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활고용주그룹(GEIQ)이란 명칭이 모범적이고 양식 있는 기업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8) 작업훈련장(Chantier Ecole, CE)²⁷⁾

1995년에 설립된 작업훈련장(CE)은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근로를 상시적으로 병행하는 직업훈련 기능이 강조된 민간자활단체이다. 작업훈련장(CE)의 취약계층 근로자는 만 26세 미만으로 취업이 어려운자, 또는 만 26세 이상의 사회부조급여 수급자로 구성된다. 이들 대부분은 학력이 낮고 전문기능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어 작업훈련장(CE)에서 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익힌 후 다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전문기능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는 작업훈련장(CE)에서 곧장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훈련장(CE)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는 훈련참여자의 특성상 주거 및 건강 등 각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개별적 자활경로를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훈련참여자와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하여 욕구를 확인하며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관 및 주거, 의료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구호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기업 및 직업훈련기관과의 협력도 긴밀하게 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에서의 연수 또한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함된다. 재정지원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그 출처가 다양하나 크게 임금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훈련참여자의 자활경로 구축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나뉘는데,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을 훈련참여자가 정부와 체결하며, 나머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그리고 작업훈련장(CE)은 건설 부분과 같이 단기적 근로일 경우도 있고 특정지역 정비 및

²⁷⁾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조직

관리로 6개월 이상의 장기적 근로일 경우도 있으며 활동부분은 건설, 환경, 재활용, 녹지공간 등 다양하다.²⁸⁾

(9) 꾸라스(COORACE)²⁹⁾

1985년에 설립된 꾸라스(COORACE)는 2009년 현재 461개의 사회적 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총 461개 기업중 자활공동체(ACI)가 52개, 중개단체(AI)가 309개, 임시자활기업(ETTI)이 36개, 자활기업(EI)이 5개, 기타가 59개이다.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약 10만명에 달하는데 이중 자활관련 근로를 하는 자들은 약 8,300명 정도이다. 중앙에는 중앙꾸라스가 있고 지역에 18개의 지역꾸라스가 있다. 꾸라스는 자활을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회원기업들에 대해 법률서비스나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18개의 지역꾸라스를 통해 여러 지원, 특히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한다.

(10) 사회재통합연맹(FNARS)³⁰⁾

1956년에 설립된 사회재통합연맹(FNARS)은 800개의 조직(이중 350개 조직은 자활조직)과 2,200개의 기관, 그리고 사회재통합숙박센터(CHRS), 긴급수용센터, 주거서비스, 사회주택, 영유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이 연맹의 여러 역할 중에 자활과 관련된 역할은 기술교육 확충, 일반기업과 자활기업(EI)간의 교류활성화를 지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들의 프로페셔널화를 지원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11) 엔비연맹(Fédération ENVIE)

엔비연맹은 1984년에 만들어졌으며 48개의 전자제품 재활용 기업들을 연합시키고 있다. 전자제품재활용이란 전기 및 전자폐품들을 수집하고 수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는 일을 말한다. 이 연맹에 가입해 있는 각 기업들은 연맹과 자격인증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다.

²⁸⁾ 김신양(2007) 내용을 발췌한 것임

²⁹⁾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조직

³⁰⁾ FNARS는 Fédéra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d'Accueil et de Réinsertion Sociale의 약자이다.

(12) 연대만들기(Tissons la Solidarité)

2004년 가톨릭교구에 의해 설립된 연대만들기(Tissons la Solidarité)는 섬유재활용분야에 특화된 자활조직들을 연합한다. 여기서 섬유재활용이란 헌옷 등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세탁 및 수선하여 가게에서 판매하는 일을 말하며, 자활조직은 주로 자활공동체(ACI)와 자활기업(EI)이다. 현재 가입한 회원기관수는 66개이다.

2) 자활성공률

프랑스에서 자활성공률 (Taux de Sortie vers l'Emploi)이란 자활기관에 들어온지 3개월 지난 후 자활계약기간 중에 다음 3가지 종류의 일자리, 즉 지속적인 일자리, 과도기적 일자리, 그리고 긍정적인 일자리 등 3가지 일자리 중 한 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자활기관을 떠났을 때 자활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3가지 종류의 일자리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CDI)이나 6개월 이상의 기간제(CDD)³¹⁾ 일자리, 6개월 이상의 파견근무, 창업, 연수나 교육, 공공부문취업자격 획득 등을 한 경우 지속적인 일자리를 취득하여 자활하였다고 간주한다. 과도기적 일자리는 6개월 미만의 기간제 일자리, 6개월 미만의 파견근무, 외부지원을 받아 근로계약을 한 경우는 과도기적 일자리에 취업하여 자활하였다고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일자리는 숙련 또는 초보숙련과정의 직업훈련 참가나 다른 자활기관으로 옮기는 경우는 긍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였다고 한다.

정부와 각 자활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자활성공 기준선에 대해 동의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최소일반자활률’은 60%, ‘지속적인 일자리를 향한 최소자활률’은 25%이며 이러한 최소자활률들은 3년내에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자활기관은 이러한 기준의 하향변경을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어떤 한 자활기관의 자활성공률 계산결과이다. 2008년, 이 자활기관에는 15명의 자활근로자가 자활기관을 떠났는데 이중 3명은 이 자활기관에 머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다. 따라서 자활률을 계산하는데 이 3인은 제외하고 나머지 12인에

³¹⁾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보면 기간제(CDD)와 비정규직은 다른 측면이 있다.

대해 계산을 하게 된다. 계산결과, 지속적인 일자리를 향한 자활률은 16.7%로 정부의 권고사항인 지속적인 일자리를 향한 최소자활률인 25%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 자활률은 66.7%로 최소일반자활률인 60%를 상회하였다.

[표 3] 자활기관을 떠난 자활근로자들의 자활률 계산방법

	지속적인 일자리	과도기적 일자리	긍정적인 일자리	기타
정규직 취업	1			
6개월이상의 기간제 취업	1			
6개월미만의 파견근무 일자리 취업		2		
고용촉진계약의 일자리에 취업		1		
숙련 또는 초기숙련과정 직업훈련 참가			2	
다른 자활기관으로 이동			1	
이사				1
구직신청자				1
연락두절				2
합계	2	3	3	4
일자리별 자활률	$(2 \times 100) \div 12 = 16.7\%$	$(3 \times 100) \div 12 = 25\%$	$(3 \times 100) \div 12 = 25\%$	$(4 \times 100) \div 12 = 33.3\%$
	일반자활률: $(8 \times 100) \div 12 = 66.7\%$			$(4 \times 100) \div 12 = 33.3\%$

자료: CNAR(2009)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프랑스 전국을 대상으로 도출한 자활기업(EI)과 임시자활기업(ETTI), 자활공동체(ACD)의 자활률이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이 자료를 보면 2007년 임시자활기업(ETTI)의 일반 자활률이 42%로 자활기업(EI)의 26.8%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활기업(ETTI) 자활근로자중 약 23%(2007년 기준)만이 고용연대급여(RSA) 수급자로서 이는 자활기관 중 가장 낮은 비율이고 또한 지난 2년 이상 실업상태이었던 근로자의 비율도 약 19%로 가장 낮은 비율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4] 프랑스 자활률

(단위: %)

	자활기업 (EI)		임시자활기업 (ETTI)		자활공동체 (ACI)	
	2006	2007	2006	2007	2007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한 자활	13,8	14,7	33,6	30,2	CAE	16,3
					CAV	11,8
					CIE	73,4
과도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	6,3	7,5	10,5	7,9		
긍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자활	5,5	4,6	4,6	3,9	CAE	6,3
					CAV	5,6
					CIE	0,5
합계(일반자활)	25,6	26,8	48,7	42,0	CAE	33,4
					CAV	25,9
					CIE	83,5

주) CAE: 취약계층 자활을 위한 근로계약.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24개월까지이며 비사업부문에서만 적용되고 이 계약을 맺은 자는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CAV: 사회적 최저부조(Minima Sociaux) 수급자에게만 해당되는 근로계약이다.

CIE: 취약계층 자활을 위한 근로계약으로 기간은 최장 24개월이며 사업부문에서 계약을 한다

자료: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2009)

한편, 자활공동체의 경우 자활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별로 자활률이 계산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근로계약들, CAE, CAV, CIE는 2010년 1월 1일을 기해 자활을 위한 근로계약이란 CUI(Contrat Unique d'Insertion)로 모두 대체되었으므로 현재에는 CUI란 근로계약 하나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다. 그리고 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CAV의 계약체결 자활근로자가 사회부조 수급자들이므로 상대적으로 가장 근로능력이 낮을 것이고 따라서 일반 자활률 역시 2007년에 25.9%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IE는 사업부문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이므로 그 대상자의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며 따라서 이들의 일반 자활률도 동년도에 8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들 자활률 중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한 자활이 우리나라에서 간주하는 자활과 가장 유사하므로 이 자활률만을 본다면 일반 자활률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하나 그래도 2007년의 경우 자활기업(ETI)은 14.7%, 임시자활기업은 30.2%로 역시 양호한 자활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자활제도 평가

본 연구에서 프랑스의 근로통합(L'Insertion par l'Activité Economique, IAE)을 편의상 자활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로통합의 규모와 의미는 자활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즉, 프랑스에서 근로통합(IAE)이란 자활의 범주를 넘어 시장경제의 결함을 치유하려는 의도가 담긴 제도이다. 특히 사회적 배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통합은(IAE), 프랑스 국민이 연대의식을 갖고 함께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의식이 바탕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기저에는 사회연대경제(ESS), 즉, 이윤이 목적이 아닌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공동체 활동의 분야이며 동시에 사람과 사회적 목적 및 사회적 서비스를 우선시하면서 비영리적인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연대경제(ESS)에 의해 프랑스 GDP의 10%, 180만 개 일자리, 1,2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점에서 보듯이 자활사업이 프랑스 특유의 민간주도의 공동체적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4대 자활기관, 즉, 자활기업(ETI), 임시자활기업(ETTT), 자활공동체(ACI), 중개단체(AI)에서 일하는 자활근로자수가 20만 명이 채 안 되는 것을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 자활제도는 사회연대경제(ESS)의 한 부분이며, 프랑스 자활제도의 목표는 단순히 자활률의 제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있는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자활 기업수와 근로자수

자활기관	내용	2006	2007	2008
자활기업 (EI)	기업수 ¹	929	961	989
	자활근로자수 ¹	12,039	12,479	12,659
	자활근로자수 ²	12,360	12,781	13,130
임시자활 기업 (ETTI)	기업수 ²	210	217	225
	자활근로자수 ²	21,723	25,385	25,425
	일자리를 제공받은 자활대상 근로자수 ²	8,753	9,853	10,146
	근로자당 평균 노동시간	281	294	305
	근로자당 평균 일거리 수	6.4	6.7	7.3
	일거리당 평균노동시간	44	44	42
자활 공동체 (ACI)	자활공동체 수	1,239	1,455	1,460
	계약상태에 있는 자활근로자수 ³	24,892	31,107	30,450
중개단체 (AI)	중개단체수 ²	-	753	782
	자활근로자수 ²	-	-	129,467

주 1: 해당연도의 12월 31일 기준

주 2: 연평균기준

주 3: 자활공동체의 자활근로자는 사회결속계획(Plan de Cohésion Sociale, PCS)의 지원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자료: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2009)

프랑스 자활기관들을 총 대표하는 자활중앙협의회(CNIAE)의 구성원은 모두 42인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도의원, 노동조합원, 경제인, 자활기관운영인 등인데, 이처럼 다양한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자활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들 구성원의 임기는 3년인데 그동안 급여없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점이 특이하게 보인다. 프랑스에는 앞서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예금공탁공사(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란 기관이 있는데 이 공사는 민관합동으로 1816년에 설립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전에 설립된 공공투자기관인데, 그 역할은 시장이 해결 할 수없는 분야에 기금을 투자하여 사회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동안의 투자처는 주로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퇴직기금, 공공주택건설, 여성경제활동, 경제위기대처, 중소기업발전, 각종 사회보험발전, 자활프로그램 등이다. 이러한 사회연대의

식과 오랜 역사의 여러 사회적 장치가 자활제도의 발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 자활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의 특징이다. 한편, 자활기업(EI)은 일반기업처럼 일반근로자가 대부분의 구성원이고 아주 적은 비율의 자활근로자가 일반근로자와 섞여 일하고 있다. 만일 자활기업(EI)의 대표가 사회연대경제 의식이 없다면 자활기업(EI)은 이윤창출에 도움이 안 되므로 별로 시도할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프랑스의 많은 기업인들이 사회연대경제에 입각하여 자활기업에 관심을 갖고 시도하려는 것이 역시 프랑스 경제사회의 특징이다. 따라서 프랑스 자활제도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제도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자활제도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려고 할 때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벤치마킹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많은 자활기관들의 설립된 년도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년도보다 빠르다. 즉, 설립되고 일정기간 운영되다가 정부로부터 정식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자활기관들은 자생력이 있고 독립성이 상당히 커서, 획일적인 정부지침은 전혀 개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물론 대부분 프랑스 자활기관들의 재정적인 독립성도 커서 운영비의 30%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예산은 자체적으로, 또는 사회로부터 후원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보아 민간주도의 자활사업 토양이 확실히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토양은 프랑스 자활관련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자생적으로 구축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도 민간주도 방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부조급여 중 자활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최저통합급여(RMI)의 탈수급률이 2007년과 2008년에 25% 전후, 그리고 동기간 편부모급여(API)의 탈수급률도 25%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007년 일반 자활률의 경우 자활기업은 26.8%, 임시자활기업은 42.0% 자활공동체는 계약상태에 따라 상이한데 약 30%를 상회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자활기관은 프랑스 정부가 반소외법을 통해 인정한 기관이 모두 4개, 즉, 자활기업(EI), 임시자활기업(ETTI), 자활공동체(ACI), 중개단체(AI)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되진 않았으나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관리기업(Regie de Quartier), 자활을 위한 고용주그룹(GEIQ), 작업훈련장(Chantier Ecole), 꾸라스(COORACE), 사회재통합연맹(FNARS), 엔비연맹(Fédération ENVIE), 연대만들기(Tissons la Solidarité) 등의 자활기관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프랑스의 자활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자활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 및 공표하지 않고 민간주도로 운영되게 단지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외법에 의해 승인된 자활기관과 승인되지 않은 자활기관간의 연대 및 교류는 대단히 긴밀하여 사실상 두 그룹간의 역할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6.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프랑스의 자활제도, 즉 근로통합제도는 우리나라의 자활제도와 비교해 볼 때 그 목적과 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일반 국민들이 자활사업에 대해 참여하여 봉사하는 풍토가 조금은 생소할 정도로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해 몇 세기 전부터 만들어져 활용되어온 기금이나 일반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복지기관들을 지원하는 것과 아울러 일반기업들이 고용연대급여(RSA) 수급자나 저소득계층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자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점 등이 관심을 끄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있다는 점은 향후 프랑스 자활제도가 더욱 커지고, 사회에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이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프랑스의 바로 위에 이웃하고 있는 영국의 자활제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영국은 2011년에 근로프로그램(The Work Programme)이라는 새로운 자활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자활업무를 민간취업알선회사에게 위탁하여 구직자수당(JSA) 수급자인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게 하여 자활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민간취업알선회사의 취업담당자가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를 구해주었거나,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 장기간 근무를 계속할수록 더 높은 상당한 수준의 보너스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영국의 자활제도는 정부주도적이고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활지원시스템을 갖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민간주도적이고 공동체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상당히 다른 스타일의 자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국의 자활제도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 등 그 토양에 맞게 형성되어 발전한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 자활제도가 만들어져서 발전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자활제도를 다루면서 우리나라에게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목적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목적³²⁾은 ①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②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이다. 즉,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을 자활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자활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자활의 목적을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자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하였을 경우 단지 자활한 저소득층들 개인만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후생이 증가하고 그리고 사회통합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통합을 자활사업의 목적으로 정한다면 경제, 교육, 행정, 법, 지역 등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이나 제도들과 연대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자활의 효과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활제도가 좀 더 효과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활에 우호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활기관들이 지역사회, 특히 지역기업이나 지역금융기관 또는 관련 기금 등과 더 연계되어 자활기관들이 겪는 예산상 어려움을 정부가 아닌 지역의 민간기관들로 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활제도의 존재이유와 우리사회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프랑스의 예에서 본 것처럼, 프랑스 자활기관들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과

32) 보건복지부(2011)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발전을 위해 조성된 여러 기금 등으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일반 국민들도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철학의 바탕위에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진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어떻게 상이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 자활봉사단을 창설하여 지역주민들이 자활대상자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 제고와 자활대상자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지역 자활기관과 자활봉사단이 협력하여 새로운 자활사업체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주민들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저소득층을 자활에 성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저소득 가구 수를 줄일 수도 있다. 자활사업은 정부주도 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연대의식을 갖고 참여할 때 자활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선진외국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같은 사회연대의식강화 그리고 민간주도의 자활사업 등은 우리나라도 참고할 점들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프랑스의 자활기업과 자활공동체의 구분, 그리고 자활기관들의 다양성, 일반기업들이 자활사업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를 일반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하여 전체 사업 참여자중 일반인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자활사업이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속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또한 일반인과 저소득계층이 함께 작업을 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참여자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근무를 해봄으로써 사회생활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함으로써 자활사업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활기관들을 모두 일반인들에게 일시에 개방한다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활기관의 일부 또는 새로운 자활기관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

종합가족수당(Prestation Familiale)은 여러 수당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은 것으로 주로 유아를 돌보고, 출산과 어린이 지원 그리고 편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이 주 역할이다. 2009년의 경우 종합가족수당의 73%가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27%만이 선정기준 이하의 가족에게 지원되었다. 2009년에 약 670만 명이 지원을 받은 바와 같이 프랑스 국민의 상당부분이 가족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종합가족수당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수당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정 가구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하는 수당은 출산준비수당(Prime à la Naissance), 출산수당(Allocation de Base), 가족보충수당(Complément Familial, CF), 새학기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ARS)이다. 이상의 수당들이 자산조사형 수당이지만 종합적인 가족수당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수당, 즉, 가족수당(AF), 가족지원수당(ASF), 고용자유선택보충수당(CLCA), 양육자유선택보충수당(CMG)도 아래에 간략히 소개하였다.

1) 소득조사형 수당

출산준비수당(Prime à la Naissance)은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하며,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 출산 바로 전에 903.07유로(2011년 기준)를 지원한다. 출산수당(Allocation de Base)은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출생부터 3세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2011년 현재 월 180.62유로를 지원한다. 가족보충수당(Complément Familial, CF)은 자녀가 3명 이상인 저소득가구에 자녀수와는 상관없이 163.71유로를 지원한다. 새학기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ARS)은 6세에서 18세의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에 새학기 준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한다. 2011년 지급액은 6세에서 10세 자녀에게는 284.97유로, 11세에서 14세 자녀에게는 300.66유로, 15세에서 18세 자녀에게는 311.11유로를 지급한다.

2) 소득비조사형 수당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AF)은 가구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자녀마다 월 79.54유로(2011년 기준)를 지원한다. 가족지원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ASF)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편부 또는 편모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여러 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월 88.44유로에서 월 117.92유로 정도가 지원된다. 고용자유선택보충수당(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CLCA)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업을 그만두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경우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첫째 아이의 탄생 이후 6개월간, 두 번째 아이의 경우 3년간 지원되며 지원액은 2011년의 경우 대략 월 141.62유로에서 월 560.40유로까지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된다.

양육자유선택보충수당(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은 자녀양육을 아이를 돌보는 기관이나 집에서 개인보모를 통해 양육을 할 경우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당이다.

취업수당(Prime pour l'Emploi, PPE)은 가구원중 최소한 한명 이상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낮춰준다. 취업수당(PPE) 대상가구가 되기 위해서는 1인가구의 연간소득은 2010년 기준으로 16,251유로, 2인 이상 가구의 연간소득은 32,498유로를 넘지 말아야 하며, 가구원수와 근로소득자수 등에 따라 선정을 위한 소득상한선은 상이해진다. 근로소득에서 감세혜택을 받는 소득액은 신청자의 연간 근로활동기간, 근로소득, 가족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제도는 결국 소득공제의 한 형태이나 미국의 EITC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전액 공제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과 사회부조 수급자에게 급여와 근로소득의 중복 수혜를 허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의 사회부조는 지역단위에서 책임지는 사회부조제도로서 사회구호(Aide Sociale)라고 한다. 사회구호(Aide Sociale)는 국가(Etat)와 도(Départements),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공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센터(Centres Communaux d'Action Sociale, CCAS)를 통해 제공된다. 먼저, 도(Département)단위의 사회구호(Aide

Sociale)로는 아동구호(Aide Sociale à l'Enfance, ASE)가 대표적이다. 아동구호(ASE)는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한다. 또한 친권이 해제된 미성년자³³⁾나 21세 미만의 성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물질적, 교육적, 심리적인 지원을 한다.

국가단위의 사회구호(Aide Sociale)로는 사회재통합숙박센터(Centre d'Hébergement et de Reinsertion Sociale, CHRS)가 있다. 이 센터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대접하여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CCA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구호(Aide Sociale)가 제공된다. 장애인구호(Aide Sociale aux Personnes Handicapées), 고령자구호(Aide Sociale aux Personnes Agées), 도시락가정배달(Portage de Repas à Domicile), 학생들의 급식, 스포츠와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Aide aux familles dans le cadre de la cantine scolaire, des activités sportive et culturelles pour les enfants scolarises) 등이며 이러한 지역의 사회구호(Aide Sociale) 프로그램은 지역사정에 따라 제공되므로 일률적이지는 않다.

³³⁾ 프랑스에서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결혼이나 부모의 요청에 의해 성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즉, 은행에서 부모동의 없이 계좌를 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들을 친권이 해제된 미성년자라고 한다.

■ 참고문헌 □

- 김신양(2007), 도심생태를 통해 자활을 일구는 ESPACES, Mimeo.
- 박노욱 외(2009년),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외국사례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박찬용(1997), 프랑스 근로복지제도, 노동연구원.
- 박찬임, 김혜원(2010), 사회적 기업실태와 발전방향, 노동연구원.
-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엄한진(2007), 프랑스 이민통합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2005년 프랑스 도시외곽지역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집 3호.
- 엄한진, 안동규(2009), 사회적 경제와 대안적인 지역개발 패러다임: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2009 전기 사회학대회, 2009. 06, 한국사회학회.
- 엄형식, 마상진(2010), 유럽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300, 2010. 10.
- 황덕순(200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황준옥 (2003), 미국 · 프랑스의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Aurélien P.(2009), *Assistance sociale et contrepartie, Actualité d'un débat ancien*, L'Harmattan, février 2009.
- Bourret C.(2006), Insertion by Economic Activity in France: Reviewing Socially Responsible Services for a Networked Society Based on Knowledge, presented at the XVI International RESER Conference. Lisbon, September 28-30, 2006 Services Governance and Public Policies.
- Castel R.(1999), *Les métamorphoses de la question sociale*, Paris, Folio-Essais.
- CNAR(2009), *Guide des nouvelles modalités de conventionnement état - IAE, 2009*, CNAR-IAE.
- Le Monde(2009), Le RSA risque d'augmenter le travail à temps partiel, *Le Monde*, le 29 août 2009.
- Michalot T.(2010), *L'évaluation par les travailleurs sociaux de la nécessité d'accueil en CHRS*
Thèse consultable Université Lyon2 http://theses.univ-lyon2.fr/documents/lyon2/2010/michalot_t
- Michalot T. et Simeone A.(2010), L'alcoolisation apparente: Un critère d'exclusion pour l'admission en CHRS d'insertion?, *Pensée Plurielle*, N°23.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2009), L'Insertion par l'Activité Economique en 2007, Premiere Syntheses Information, DARES, Avril 2009-no17.2.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2011), *Minima sociaux et prestations sociales en 2009*,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

Recent Trends in Structure of the French Insertion by Economic Activ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Park, Chanyong*

This paper focuses on structure of the French IAE by studying their operating systems, salient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There are four IAE organizations which are approved by the law on the struggle against exclusion, Also, there are another seven IAE organizations which are not approved by the law. However they work all together as regular IAE of France. It is the CNIAE that plays a role of a control tower for all of the IAE organizations. The major participants on these organizations are recipients of the RSA. The IAE's success rates appeared with relatively high level, for instance, in 2007, 26.8% for the EI, 42% for the ETTI, and approximately 30% for the ACI. The target of the IAE is not only an augmentation of its success rate, but a redemption of the structural weakness in market economy and at the same time, an implementation of a socially responsible economy. It is one of the best features that the IAE has been greatly favored and operated by multiple social devices which were formed for originally another issues, such as social fund being raised two centuries ago and still supporting the IAE, many enterprises financially supporting the IAE in the spirit of philanthropy, certain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hiring and training recipients of social assistance for the purpose of their ultimate insertion, etc.

Key words: IAE, France, Social Assistance, Public Assistance, Social Welfare, Social Policy, Unemployment, Poverty

◆ 2012.02.13. 접수 / 2012.03.13. 1차 수정 / 2012.03.16. 게재 확정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ndong National University, parkch@andong.ac.kr